

의안 번호	제3641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7월 11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7월 2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 
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적을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 
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거리를 설정함(안 제32조의3)
- 나.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 통지  
해야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(안 제34조)
- 다.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시 인수가격 및 인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 
정함(안 제37조의2, 제37조의3)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